

선거관리위원회공보

제 104 호

2014년 10월 31일(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 목 차 —

법 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478
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48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482

질의회답

[정치자금법]	483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명함에 후원금 모금 고지를 위한 후원회지정권자 사진 등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483
정치자금으로 축기·근조기 제작비용 등 지출에 관한 질의회답	48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484
어민신문에 지구별·업종별 수협인사 등 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484

판례

헌법재판소 2014.10.30 선고 2012헌마192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485
---	-----

공지사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489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선거 정책설명회	491
공영선거관리유공 정부포상자	492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492

법 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8호)
(제정 2014. 10. 16., 시행 2014. 10. 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표창 수여시 수상자에게 표창장만을 수여하였으나,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표창 수장 및 단체표창 수치를 함께 수여하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받은 자에게 별표 19의 2의 개인표창 수장(綬章) 또는 별표 19의3의 단체표창 수치(綬幟)를 함께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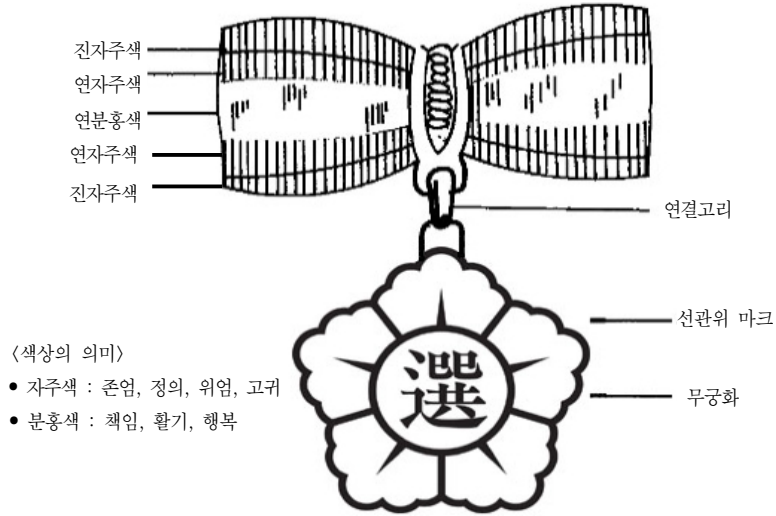
별표 19의2 및 별표 19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9의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개인표창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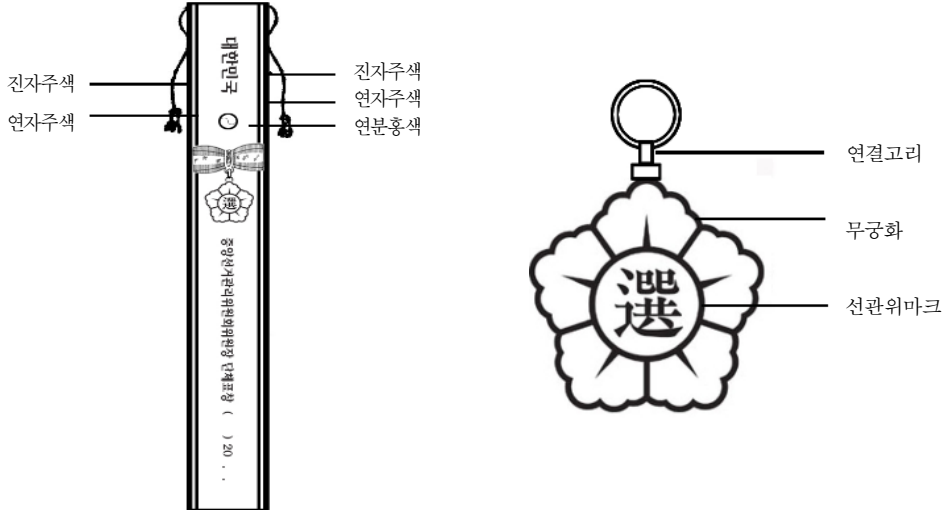


수장 제식표

구분	모양	크기 (mm)	색상	재질	비 고
정장 (正章)	무궁화	30.0	금 색	은	
	선관위 마 크	11.5	군청색	은	
	중량(g)	11.0			
수 (綬)	너비	17.0	진자주색 연자주색 연분홍색	견직	윗부분(진자주색 4, 연자주색 2) 가운데(분홍색 5) 아랫부분(진자주색 4, 연자주색 2)
	길이	36.0	진자주색 연자주색 연분홍색	견직	2겹

[별표 19의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단체표창 수치



수치 제식표

구분	모양	크기 (mm)	색상	재질	비 고
정장 (正章)	무궁화	40.0	금 색	은	
	선관위마크	15.5	흰 색	은	
	중량(g)	23.5			
수 (綬)	너비	80.0	진자주색 연자주색 연분홍색	견직	왼 쪽(진자주색 6, 연자주색 6) 가운데(연분홍색 56) 오른쪽(진자주색 6, 연자주색 6)
	길이	900.0	진자주색 연자주색 연분홍색	견직	
	태극	35.0	위 : 붉은색 아래 : 파란색	수 · 금사	
	리본	80.0	진자주색 연자주색 연분홍색	견직	
	수술	600.0	연분홍색	견직	

○ 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 제420호)
(발령일자 2014. 10. 19.)

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당·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선거의”를 “선거와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투표의”로 한다.

제2조 중 “선거를”을 “선거 및 투표를”로, “정당”을 “지원을 요청한 정당”으로, “선거가”를 “해당 선거 및 투표가”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할위원회”라 함은”을 “관할위원회”란”으로, “선거”를 “선거 또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단체 등”이란 제5조제2항에 따른 선거지원 대상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표지원 대상인 법인·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5.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관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거 및 투표에 대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의 관할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시·도”를 “시·도 및 구·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가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를 지원하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이 경우 제2항제3호 중 “선거”는 “투표”로 본다.

제12조 전단 중 “전산조직에 의한”을 “전산조직 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따른다”를 “따르며,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때의 투표·개표사무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지원) ① 위원회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에 대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투표·개표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단체 등은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을 해당 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을 요청한 단체 등과 협의하여 책임의 한계, 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의 구체적인 지원절차, 투표·개표사무, 경비의 납부·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선거에”를 “선거 및 투표에”로, “선거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선거지원 요청 및 지원여부 결정)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약정서 및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서면약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 제421호)
(발령일자 2014. 10. 29.)

◇ 개 정 이 유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안제도 운영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 요 내 용

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의 범위 확대 및 절차 개선(제2조 및 제10조)

- 서식의 정비 등 단순한 내용도 제안의 범위로 봄.
- 사무처장 및 사무국과장(중앙위원회의 경우 해당 과장)의 결재 없이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안관리시스템 관련 규정 신설(제30조)

- 제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제안의 제출, 접수, 심사부서 의견 수렴, 사후관리 규정 신설

다. 제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제4조, 제6조, 제7조)

- 직제 개편에 따른 제안제도 관장기관(사무총장)의 보좌기관명 수정
: 기획조정실장 ⇨ 기획관리실장
-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주제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가능
- 제안심사위원회 회의운영 관련 서면의결 근거 마련
-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사특전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명확히 함.

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당·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선거의”를 “선거와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투표의”로 한다.

제2조 중 “선거를”을 “선거 및 투표를”로, “정당”을 “지원을 요청한 정당”으로, “선거가”를 “해당 선거 및 투표가”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할위원회”라 함은”을 “관할위원회”란”으로, “선거”를 “선거 또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단체 등”이란 제5조제2항에 따른 선거지원 대상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표지원 대상인 법인·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5.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관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거 및 투표에 대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의 관할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시·도”를 “시·도 및 구·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가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를 지원하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이 경우 제2항제3호 중 “선거”는 “투표”로 본다.

제12조 전단 중 “전산조직에 의한”을 “전산조직 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따른다”를 “따르며,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때의 투표·개표사무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지원) ① 위원회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에 대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투표·개표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단체 등은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을 해당 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을 요청한 단체 등과 협의하여 책임의 한계, 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의 구체적인 지원절차, 투표·개표사무, 경비의 납부·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선거에”를 “선거 및 투표에”로, “선거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선거지원 요청 및 지원여부 결정)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약정서 및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서면약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의회답

[정치자금법]

-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명함에 후원금 모금 고지를 위한 후원회지정권자 사진 등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병주 의원실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명함에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과 후원금 모금 계좌를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 8. 27. 도소연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과 후원금 모금 계좌를 게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15조제1항·제5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4. 9.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정치자금으로 축기·근조기 제작비용 등 지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축기·근조기 발송과 관련하여 법률상 정치자금 지출 가능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면응답을 요청합니다.

1. 축기·근조기 제작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 가능한지 여부
2.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축기·근조기의 배송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 가능한지 여부

(2014. 10. 7. 국회의원 김상민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기나 근조기를 제작하고 귀문과 같이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배송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2014. 10.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어민신문에 지구별·업종별 수협인 신년인사 등 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우리 어민신문은 연안 어업인의 복리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설립된 주간 수산전문지입니다.

1. 우리 신문은 매년 신년특집과 창간 특집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특집신문에 전국의 회원 조합이 어업인(조합원)에 대한 새해인사와 창간의 축하(창간일 5월 15일)를 겸하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기원하는 일명 명패광고를 아래의 광고내용과 같이 공동으로 게재하는 경우, 선거법의 저촉여부?

2. 업종별 조합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해당 조합장의 이름·사진이 없이 신년인사 및 창간축하 계기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광고 게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재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5년에는 전국의 “조합장동시선거”를 실시하게 되므로 광고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광고는 조합 단독이 아니고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요령으로 첨부된 광고안과 같이 공동으로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자신의 홍보를 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선거법의 위배가 아니라 사료되며, 특히, 이번의 선거

는 전국 각 지역의 조합이 동시선거를 실시하므로 지역별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 신년인사 광고 〉



〈 창간축하 광고 〉

2013년 5월 13일 월요일 제1145호

漁民新聞



〈 이미지 광고 〉



(2014. 9. 23. (주)어민신문 대표이사 임재홍)

【 답 】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각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 조합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해당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함)을 지지·선전하거나 조합장의 직명·성명을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민신문에 다른 조합들과 공동으로 신년인사 광고 또는 신문창간 축하광고를 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동 광고에 조합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신문에 조합장에 대한 지지·선전하는 내용 없이 해당 조합의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함.

(2014. 10.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판례

○ 헌법재판소 2014.10.30 선고 2012헌마192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자치구의 분할 및 통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표는 그 전체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각하,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50%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 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대전광역시 동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동백동 및 수지구 상현2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과 쌍용3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논현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
- 청구인들은 자치구의 분할만을 금지하고 행정구는 그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및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구를 분할하여 자의적으로 다른 구에 통합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②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2012헌마190),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2012헌마192),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및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2012헌마211),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및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2012헌마262, 2012헌마3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부분(2013헌마78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2014헌마53)(이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 심판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부분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또한, 일부 청구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및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을 ‘문제된 4개 선거구’라고 특정하기로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단서 생략)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선거구구역표의 상세한 내용은 생략)

□ 결정주문

-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에 대한 심

판청구를 각하한다.

-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3.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 단위 중 자치구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로 편입하는 것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행정구의 분구 및 통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률 조항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행정구가 분할되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회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를 편성한 이후에야 비로소 2012헌마262 사건의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가 분할되어 다른 선거구와 통합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 아니라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이상,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우리 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로 제시한 바가 있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그러나 다음의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

- (1)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다. 더구나, 단원제 하에서는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 (2)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 (3)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불균형은 같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같은 농·어촌 지역 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다음 선거까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고,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함에 있어 비록 상설기관은 아니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공직선거법 제24조), 선거구 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 (5) 마지막으로 점차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관례와 입법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6)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33.3%를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 문제된 4개 선거구가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회가 문제된 4개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행정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구와 합구하거나 통합한 주된 이유는 이러한 방법 외에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분구된 지역은 행정구역도상으로 합구된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국회가 특정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지역의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 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2012헌마211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회가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및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을 획정함에 있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위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국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참고하여야 할 뿐 선거구획정안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구획정안의 내용과 다르게 선거구를 획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3헌마325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봉○○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및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이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통일성을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현행 공직선

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서는 서북구 쌍용2동을 동남구 신방동과 묶어 “천안시 제4선거구”로 확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문제된 4개 선거구구역표는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다.

○ 위헌선언의 범위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2000헌마92등 사건에서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던 상황과 크게 달라진바 없는 현 시점에서는 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

우선,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이익들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 있어 행정구역의 분리 금지 및 국회의원정수의 고정과 같은 선거구 조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장애 요소 역시 존속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대부분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선거구 조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을 고려할 때 원활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선거구의 숫자를 늘리는 방안 역시 부정적인 국민 정서나 예산상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법률을 개정하여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

다수의견은 다른 나라들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엄격히 하고 있음을 위헌논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의회에서 지역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시 지역대표성을 감안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인구편차 33⅓%를 넘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거구들은 모두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인 상하 50%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달리 위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공지사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 선거일 : 2015. 3. 11.(수) 07:00 ~ 17:00
2. 선거기간 : 2015. 2. 26. ~ 3. 11.(후보등록 2. 24. ~ 2. 25.)
3. 대상조합 : 1,353개(농협 1,142, 수협 82, 산림 129), 295만여 명 예상
4. 선출방식 : 조합원 직선제(1,327개 조합), 대의원 간선제(26개 조합)
5. 투표방법 : 읍·면·동마다 1개씩 투표소를 설치(다만, 동의 경우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가능)하고, 구·시·군 단위 통합명부에 의한 투표용지발급기로 투표용지 교부 및 투표
 - ※ 섬 또는 산간오지 등 투표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조합과 협의를 통해 거소·순회·인터넷 투표가 가능
6. 선거운동 (2015. 2. 26. ~ 3. 10.)
 -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 이용(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배부가 있음.
 - ※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발송, 전화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에 의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음.
7. 기타
 -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최고 1억원)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

〈 동시조합장선거 시행 연혁 〉

- 1987. 11. 7.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위탁선거관리 근거규정 신설)
- 2005. 5. 1. 산림조합장선거 위탁관리
- 2005. 7. 1. 농·축·수협조합장선거 위탁관리
- 2011. 3. ~ 2012. 2. 농·축·수협조합장선거 동시선거 근거 마련
- 2014. 6. 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8. 1.시행)
-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예정)

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14. 9. 21(일)	해당 조합에서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을 한 것으로 봄	해당조합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법§8
9. 21(일)부터 3. 11(수)까지	기부행위 제한	누구든지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 · 35
12. 20(토)까지	[농협] 해당 조합 · 다른 조합 · 연합회 · 중앙회직원, 상임이 · 감사, 해당 조합자회사 상근임 · 직원, 다른 조합장, 연합 · 중앙회장, 공무원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상임이사 · 직원, 자회사상근임 · 직원, 다른 조합장 · 상임임 · 직원, 중앙상임임 · 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농협 · 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농협정규§69①2 산림규약§8①2
15. 1. 19 (월)까지	[수협]해당 조합상임이 · 감사 · 직원, 다른 조합상근임 · 직원, 중앙회상근임 · 직원, 해당 조합 · 중앙회 자회사상근임 · 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산림조합] 경업관계 해소기한	수협 · 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수협규정§8②2 산림규약§8①4
2. 20(금)부터 2. 24(화)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해당조합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24(화)부터 2. 25(수)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 26(목)	선거기간개시일	-	-	법§13
2. 28(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	명부확정일전일까지	법§25 · 26
3. 1(일)	선거인명부 확정	해당조합	선거일전 10일	법§15①
3. 1(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51①
3. 3(화)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3. 6(금)까지	개표소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51①
3. 8(일)까지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 ·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법§51①
3. 9(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 · 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 10(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 · 신고	후보자	선거일전일까지	법§45①
3. 11(수)	투 · 개표	관할위원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 제8장
4. 10(금)까지	선거경비 정산 · 반환	관할위원회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2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선거 정책설명회

1. 일 시 : 2014. 10. 8.(수) 13:30 ~ 15:30
2. 장 소 : 그랜드힐튼호텔(서울 서대문구)
3. 대 상 : 세계한인회장 350명 정도
4. 강 사 : 선거2과 주재우 사무관
5. 주요내용
 - 재외선거제도 도입 의의 및 2012년 양대 재외선거 평가
 -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안내
 - 재외선거의 성공적 정착과 공정한 관리를 위한 당부 및 협조사항
 - 재외선거 관련 질의응답
6. 주요장면



공영선거관리유공 정부포상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한 자)	포상훈격
1	와이티엔(YTN)	상무	김백(金伯)	국민훈장동백장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이사관	문병길(文炳吉)	근정포장
3	중앙일보	기자	김정하(金正河)	대통령표창
4	(주)문화방송	TV프로듀서	김태호(金泰浩)	대통령표창
5	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서종국(徐鍾國)	대통령표창
6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김종대(金鐘大)	대통령표창
7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김세환(金世煥)	대통령표창
8	우정사업본부	전산주사	조성녀(趙誠女)	국무총리표창
9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하봉(鄭夏奉)	국무총리표창
1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석담(金石潭)	국무총리표창
11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김원식(金原植)	국무총리표창
1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문용준(文龍準)	국무총리표창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 정당등록(17)

(2014. 10. 30. 현재)

정당명 (약칭)	등록연월일	대표자(생년)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새누리당	'97. 11. 24	金武星(5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한양빌딩	3786-3000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14. 3. 26.	文喜相(45)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4 신동해빌딩 7, 11층	1577-7667
통합진보당(진보당)	'11. 12. 13	李正姬(69)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2139-7777
정의당	'12. 10. 31	千皓宣(62)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5층	2038-0103
겨레자유평화통일당	'12. 11. 13	鄭在福(46) 柳承求(61)	서울시 종로구 백석동길 224 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1899-3689
경제민주당	'12. 2. 27	安東玉(61)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7길 14 2층(창신동72)	3482-0114
공화당	'14. 5. 14	申東旭(6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3 우림빌딩 5층 501호	515-5091
국제녹색당	'07. 8. 8	李來元(44)	서울시 종로구 종로17길 12, 뉴과고다빌딩 209호	747-1958
그린불교연합당(불교당)	'12. 12. 11	李在烈(49)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6, 리버타워 701호	785-3300
기독교민주당(기독교당)	'14. 5. 1	朴斗植(49)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0 라이프오피스텔 423호	1800-7871 761-7822
노동당	'12. 10. 22	李鏞吉(54)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6004-2000
녹색당	'12. 10. 22	河昇秀(68) 李侑珍(7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2 (2층)	737-1711
대한민국당(대민당)	'12. 7. 16	李東振(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센타빌딩 507호	2242-1478
민주당	'14. 9. 25	姜信成(57)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삼희익스콘벤처빌딩 708호	711-9622
새마을당	'12. 2. 13	金機贊(4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극동VIP빌딩 1103	780-1274
새정치국민의당(새정치당)	'12. 11. 13	李恩榮(63)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21(여의도동, 동성빌딩 709호)	761-8007
한나라당	'13. 4. 15	李泰熙(58)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라길 5, 진선미빌라 6층	723-8100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3)

창당준비위원회명	신고연월일	대표자(생년)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활동기간 만료일
자유민주통일당	'14. 5. 9	白承元(49)	서울시 중구 을지로 250 을지회관 4층 408호	2231-5000	'14. 11. 9
고용복지연합금진화연대	'14. 9. 15	朱明龍(45)	서울시 중구 동호로 15길 43 213호	2231-6216	'15. 3. 15
바른정치연대	'14. 10. 10	崔永祿(6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상제리제센터 A동 1307	3288-9798	'15. 4. 10